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 제한법·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 【적용이율】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6%p를 제공한다.

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확인서 제출 : 연 0.3%p
 2.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 기부 동참 : 연 0.2%p
 3. 종이통장 미 발행 : 연 0.1%p
 4. 환경지킴 서약 동참 : 연 0.1%p
- ※ 우체국장우대이율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우대이율 적용

-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확인서 제출」 우대는 신규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전월의 말일까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가입확인서」를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경우
 2.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 기부 동참」 우대는 신규 가입 시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에 기부를 신청하고 기부금(1천원 이상)을 1회 이체한 경우※ 우체국 본인명의 수시입출식 계좌에서 신규 가입한 월의 말일에 기부금이 출금되어 우체국공익재단 협약기관의 기부금 계좌로 이체됨
 3. 「종이통장 미 발행」 우대는 우체국 창구에서 신규 가입 시 「통장 미 발행」을 선택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4. 「환경지킴 서약 동참」 우대는 신규 가입 시 「환경지킴 서약」에 동참하는 경우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제11조 【금융서비스】

- ① 이 예금은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해지 포함 3회) 「분할해지 서비스」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며 분할해지 후 잔여 예금은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중도해지 적용 방식을 적용한다.

② 이 예금은 만기일에 연결된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만기 해지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압류, 사고신고, 예금담보대출,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가 불가하다.

제12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4조【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5조 【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